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(지방자치단체장)은(가)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사업의 연간 계획수립
- ② 공익활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(활동비, 부대경비)
-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교육 활동
- ④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2조(위탁기간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 운영 기간을 2024. 1. 1.부터 2024. 12. 31.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,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) “수행기관장”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① 위탁사업은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12개사업 1,710명으로 아래와 같다.
 - 공익활동사업(9개사업, 1,130명): 행복스쿨 1사업, 행복스쿨 2사업, 행복스쿨 3사업, 따손영양맘사업, 실버공공기관지원사업, 실버체육시설지원사업, 실버복지시설지원사업, 실버도서관지원사업, 우리고을문화재지원사업
 - 사회서비스형사업(3개사업, 580명) : 할머니맘, 시니어연금가이드, 실버사회활동지원사업
- ② 대상 사업지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참여대상은 사업유형별 만65세 또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월 30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(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최대 월 60시간 활동을 원칙)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,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용)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김해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14조 및 15조」에 의거,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각 단위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비용은 단위사업 참여 노인의 활동비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.
- ③ 각 공익활동 단위사업 참여 활동비(급여)는 1일 3시간 월30시간 근무 290,000원으로 한다. 사회서비스형은 최소 주 15시간 월 60시간으로 월 최대 761,040원(주휴수당 포함),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 하여야 한다.
- ④ 비용의 지급 시기는 ‘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’ 활동 내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“수행기관장”이 청구하며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분기별 지급한다.

제5조(장부 등의 비치)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(공익활동) 사업신청 제반 서류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참여자용)
상담의견서, 참여자 명부 및 활동비 입금 계좌내역, 활동비 대장명부, 사업현황 보고,
활동일지, 금전 출납부, 지출 증빙서류 등
(사회서비스형) 사업신청 제반 서류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(참여자용), 상담의견서, 참여자 명부 및 인건비 입금 계좌내역, 인건비 대장명부, 사업현황
보고, 출석부, 금전 출납부, 지출 증빙서류 등

제6조(사고책임) 상해 등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고, 근무시간 내 재해 및 인명사고 등
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수립, 교육실시 등 자체 방안을 수립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
“수행기관장”이 책임을 진다.

제7조(중대재해 예방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
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
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
한 조치
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
에 관한 조치
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**응급처치 등** 필요한 조치
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’

제8조(지도·감독·조치) ①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
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“수행기관장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수시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 운영 및 회계에 대한
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
회수, 당해 연도 협약체결 해지, 익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) “수행기관장”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참여자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방
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“수
행기관장”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
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충실히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

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결정에 따른다.

제12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3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 (인)

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클린은모닝 사업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클린은모닝 사업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클린은모닝 사업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위생관리용역업(청소대행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493,95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 - 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 - 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은모닝서비스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청소대행업을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

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클린은모닝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123,488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123,487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123,488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123,487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

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 (인)

별첨 1. 사업계획서 1부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은모닝택배사업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은모닝택배사업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가. (위탁)사업명 : 은모닝택배

나. (위탁)사업내용 : 택배서비스업(아파트거점택배 및 정부양곡경로당택배)

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
라. (위탁)사업비 : 10,680천원

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
바. 협약당사자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
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가. 은모닝택배는 택배서비스업으로 정부양곡경로당택배업 운영

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
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

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
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은모닝택배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2,670천원

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2,670천원

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2,670천원

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2,670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- 가. “수행기관장”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
○ 작성, 관리 서류
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 

○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
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종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

별첨 1. 사업계획서 1부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칠암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칠암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칠암점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칠암도서관 별관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26,70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칠암도서관 실버카페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칠암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6,675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6,675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6,675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6,675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- 가. “수행기관장”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
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
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
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
○ 작성, 관리 서류
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
○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
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별첨 1. 사업계획서 1부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화정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화정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화정점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화정글샘도서관 1층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42.72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 - 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 - 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화정글샘도서관 실버카페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화정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10,680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10,680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10,680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10,680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사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본부
제5조
수행기관장
의무

- 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종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- 별첨 : 1. 사업계획서 1부.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구산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구산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구산점

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1층)

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
라. (위탁)사업비 : 26,700천원

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
바. 협약당사자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
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실버카페 운영

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
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
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
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구산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6,675천원

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6,675천원

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6,675천원

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6,675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- 가. “수행기관장”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
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
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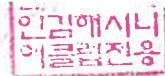
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
○ 작성, 관리 서류
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
○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


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

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의)

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

별첨 1. 사업계획서 1부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팔판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팔판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팔판점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1층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32,04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 - “지방자치단체장” 자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 - 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실버카페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고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 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팔판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8,010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8,010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8,010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8,010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的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별첨 1. 사업계획서 1부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석봉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석봉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석봉점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장유1동행정복지센터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16,02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실버카페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



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 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석봉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4,005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4,005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4,005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4,005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的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충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별첨 : 1. 사업계획서 1부.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율하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율하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율하점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복재문화박물관 내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29,37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 - 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 - 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김해복재문화박물관 실버카페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

제2조(사업의 목표)

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 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율하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7,342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7,342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7,343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7,343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的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츠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

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별첨 : 1. 사업계획서 1부.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달보드레 장유점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달보드레 장유점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달보드레 장유점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커피 제조·판매(장유도서관)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42,72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·판매업으로 화정글샘도서관 실버카페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제2조(사업의 목표)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화정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10,680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10,680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10,680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10,680천원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的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등 담당부서
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마. 중대재해 예방 의무
1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 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2.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- 별첨 : 1. 사업계획서 1부.
2. 사업단 운영규정

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장(지방자치단체장)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노인공동작업장(행복두레)』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노인공동작업장(행복두레)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위탁사업 개요

- 가. (위탁)사업명 : 노인공동작업장(행복두레)
- 나. (위탁)사업내용 : 공산품제작 및 판매
- 다. (위탁)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라. (위탁)사업비 : 106,800천원
- 마. (위탁)사업책임자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
- 바. 협약당사자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지자체명 : 김해시 대표자 : 홍태용
“수행기관장” 기관명 :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: 박명아

② 사업수행범위

- 가. 행복두레는 제조업으로 김해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
- 나.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
- 다.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



제2조(사업의 목표)

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① ‘수행기관장’은 ‘사업계획서’(별첨1)와 ‘사업단 운영규정’(별첨2)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‘수행기관장’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③ “수행기관장”은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사업단 운영규정’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, 사후 ‘지방자치단체장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행기관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비의 지급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게 다음과 같이 노인공동작업장(행복두레)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협약서 제7,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가. 제1차 : 2024년 1월 20일, 26,700천원
- 나. 제2차 : 2024년 4월 20일, 26,700천원
- 다. 제3차 : 2024년 7월 20일, 26,700천원
- 라. 제4차 : 2024년 10월 20일, 26,700천원



제5조(권한과 의무)

-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“수행기관장”的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 권한
 - 나.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
 - 다.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
 - 라.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
 - 마. 참여자, 전담인력 모집·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
- ②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가.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
 - 나. 「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」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및 기타 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)을 준수하고,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
 - 다.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·감독 기관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의 정기점검,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,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·보고 의무
 - 라.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,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
- 작성, 관리 서류
- 사업신청 제반서류,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(개인용), 상담의견서, 근로계약서,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, 임금대장명부, 사업현황보고, 임금 관리대장, 참여자 출근부, 금전출납부, 지출증빙서류, 계약관련서류, 자산대장, 사업 정보공개 등
-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
-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
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
 -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

제6조(사업수행 결과보고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①항의 ‘사업운영(종결)보고서’ 제출시 사업비(보조금 및 수익·적립금)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‘사업계획서’, 별첨2의 ‘사업단 운영규정’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위반 및 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
나.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다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

마.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

바.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“수행기관장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1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

2023년 12월 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시니어클럽관장



별첨 : 1. 사업계획서 1부.
2. 사업단 운영규정